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6. 13 선고 2022가단6397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3. 21.

판 결 선 고 2023. 6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148,018원 및 그 중 35,176,751원에 대하여 2023. 3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8. 19. 주식회사 D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과 사이에, 'G90' 차량 1대(차량번호 1생략)에 관하여 차량가 9,493만 원, 잔존가치 30,757,000원, 리스기간 60개월, 리스로 월 1,524,000원(결제일: 매월 10일), 연체이율 연 24%로 정한 시설대여(리스)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리스'라 한다).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,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 리스료와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다. 그런데 2022. 5.부터 이 사건 리스료가 연체되었고, 이에 원고는 2022. 7. 11.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, 2022. 7. 28. 이 사건 리스차량을 회수하였다.

라.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금액은 2023. 3. 10. 현재 40,148,018원(= 원금 35,176,751원 + 지연손해금 4,971,267원)이다.

[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,148,018원 및 그 중 원금 35,176,751원에 대하여 2023. 3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는, 이 사건 리스차량을 실제 운행한 E가 소외 회사 명의로 계약 체결을 부탁하기에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였을 뿐이고,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는 2022. 9. 7.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(피고가 2023. 3. 16.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고

하더라도,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),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내심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,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현경